

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
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를)
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

2026. 06



진도군

목 차

제 1 장	계획의 목적 및 개요	5
1.1	계획의 배경 및 목적	5
1.2	실시근거	7
1.3	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	9
1.4	계획의 내용	9
제 2 장	환경보전목표의 설정	13
2.1	환경보전목표	13
제 3 장	대안의 설정	17
3.1	대안의 검토	17
제 4 장	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의 설정	21
4.1	평가항목·범위·방법	21
제 5 장	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27
5.1	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27
제 6 장	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	29
6.1	환경영향평가협의회	29
6.2	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	32

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삼별초공원은 기 조성되어 현재 공원 내 파크골프장, 한옥체험관, 캠핑장 등의 다양한 시설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,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의 미정비구간 피해발생에 따라 소하천 정비 및 미관 정비를 필요로 함.
- 금회 계획을 통해 소하천 정비 구역을 확장시켜 홍수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운림삼별초 공원과 연계하여 소하천의 자연적인 형태 및 유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.
- 또한, 운림삼별초 공원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의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, 이에 따른 지역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.
- 본 과업은 최초 2018년 1월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으로 승인·고시가 되었으며, 이후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른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(협의완료일: 2021.06.22) 후 2024년 12월에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준공 완료하였음.
 - 금회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‘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(변경) 고시(전라남도 고시 제2025-507호)(25.12.11)’ 되었으며, 지역개발계획 구역 변경(당초 : 28,580㎡ → 금회 : 71,600㎡)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를 실시하고자 함.

〈표 1.1-1〉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(변경) 고시(전라남도 제2025-505호), 2025.12.11.

명칭	사업명	사업내용	사업기간	총 사업비
전라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	의신면 운림삼별초 공원정비사업	• 당초 : 하천정비 - 28,580㎡(L=775m) • 변경 : 하천정비 - 71,600㎡(L=2,002m)	• 당초 - 2020~2027 • 변경 - 2020~2028	• 당초 - 4,000백만원 • 변경 - 7,500백만원

전라남도 고시 제2025-505호

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(변경) 고시

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(변경)에 대해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5. 12. 11.

전라남도지사

1. 지역개발계획(변경)

지역	계획유형	사업명	구분	사업내용	사업비(백만원)				변경내용	
					총 사업비	국비		지방비		민자
						국도부	타부처			
전남	소계	9건(신규 1건, 제척 3건, 내용변경 5건)								
전라 남도	담양군 (1)	발전 촉진	대나무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	제척 ■ L=1.9km, B=10m	2,345	380		1,965		제척
	화순군 (1)	발전 촉진	화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	당초 ■ A=64,214.3㎡ ■ 2015-2022	21,000		10,500	10,500		내용 변경
				변경 ■ A=64,260.3㎡ ■ 2015-2025						
	장성군 (3)	발전 촉진	백암산 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	제척 ■ L=1.65km, B=10m	7,000	7,000	-	-	-	제척
			황룡강 지방정원 연결도로 확장사업	신규 ■ L=2.9km, B=9.5m	7,000	7,000				신규
			황룡강 르네상스 레저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	당초 ■ 주차장 90면, 회전교차로 1개소 ■ 2021-2027 변경 ■ 도로 확포장, L=0.80km, B=8.0m ■ 2021-2028	1,800	1,800				내용 변경
	진도군 (2)	발전 촉진	진도읍-운림산방 연결도로 위험구간 정비사업	제척 ■ L=2.9km, B=9.5m	3,000	3,000				제척
			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	당초 ■ 하천정비 A=28,580㎡, L=775m ■ 2020-2027 변경 ■ 하천정비 A=71,600㎡, L=2,002m ■ 2020-2028	4,000	4,000				내용 변경

<그림 1-1>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(변경) 고시(전라남도 고시 제2025-505호)

1.2 실시근거

1.2.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에 의거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지정 협의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고자 함.

〈표 1.2.1-1〉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분	내용	비고						
제9조 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13.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							
시행령 제7조 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)	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(이하 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”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종류는 [별표2]와 같다. [별표2]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개발기본계획의 종류</th> <th>협의요청시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과, 특정지역의 개발</td> <td>12)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</td> <td>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요청시기	과, 특정지역의 개발	12)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	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	
구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요청시기						
과, 특정지역의 개발	12)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	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						

〈표 1.2.1-2〉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 실시근거

구분	내용	비고
제20조 (재협의)	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. 1.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	
시행령 제28조 (재협의 대상)	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(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를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

1.2.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.

<표 1.2.2-1>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분	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·규모	협의 요청시기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적용지역	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) 보전관리지역 : 5,000제곱미터 2) 생산관리지역 : 7,500제곱미터 3) 계획관리지역 : 10,000제곱미터	사업의 승인등 전
7. 「소하천정비법」 적용지역	다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,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,500제곱미터 이상인 것	
계획구간	○ 총 사업면적 - 당초 : 28,580㎡(L=775m) - 변경 : 71,600㎡(L=2,002m)	

1.2.3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병행 실시 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을 실시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.

<표 1.2.3-1>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병행 실시근거

구분	내용	비고
시행령 제60조 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)	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 1.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: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.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: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	

1.2.4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실시근거

- 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준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실시하는 바임.

1.3 계획의 추진경위

- 2012. : 윤림삼별초 공원 준공
- 2018. 01. :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승인·고시(전라남도 고시 제2018-2호)
- 2021. 06. 22 :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
- 2022. 03 :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일괄 승인·고시
- 2022. 06~2024. 12 :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착공 및 준공
- 2025. 12. 11 :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(변경) 고시(전라남도 고시 제2025-505호)
- 2026. 03 : 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 용역 착수
- 2026. 05. 14 ~ 06. 05 :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
- 2026. 06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(예정)

1.4 계획의 내용

가. 계획명

- 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

나. 계획범위

- 공간적 범위
 - 위 치 :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일원

- 면 적 : 71,600㎡(L=2,002m)

○ 시간적 범위
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8년

다. 계획시행자 및 승인기관

○ 계획시행자 : 진도군

○ 승인권자 : 전라남도

마. 주요 내용

○ 소하천 현황

구 분	소하천 번호	소하천 명	과 업 구 간		유역 면적 (km ²)	유로 연장 (km)	과업 연장 (km)	비 고
			시 점	종 점				
의신면	4-11	사천천	의신면 사천리 40	의신면 사천리 산85-4	7.58	4.449	2.002	

○ 계획 변경(안)

구 분	내 용		비 고
	당 초	변 경(안)	
개발사업명	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	변경없음	
사업내용	하천 정비 A=28,580㎡, L=775m	하천 정비 A=71,600㎡, L=2,002m	구역확장
사업기간	2020~2027	2020~2028	사업기간 변경
사 업 비	4,000백만원 (국비4,000)	7,500백만원 (국비5,850, 지방비1,650)	증)3,500백만원
사업시행자	진도군수	변경없음	



<그림 1-2> 계획구간 도면

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2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 특성, 입지여건,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별하여 대기환경, 수환경, 토지환경, 자연생태환경, 생활환경 등 제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설정함.

2.2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

- 본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조사·분석하기 위하여 계획대상의 특징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황조사 범위와 예측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함.
- 따라서,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주요 평가항목별 영향요인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분 설정함.

2.2.1 계획의 범위

가. 공간적 범위

- 위 치 :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일원
- 면 적 : 71,600m²(L=2,002m)

나. 시간적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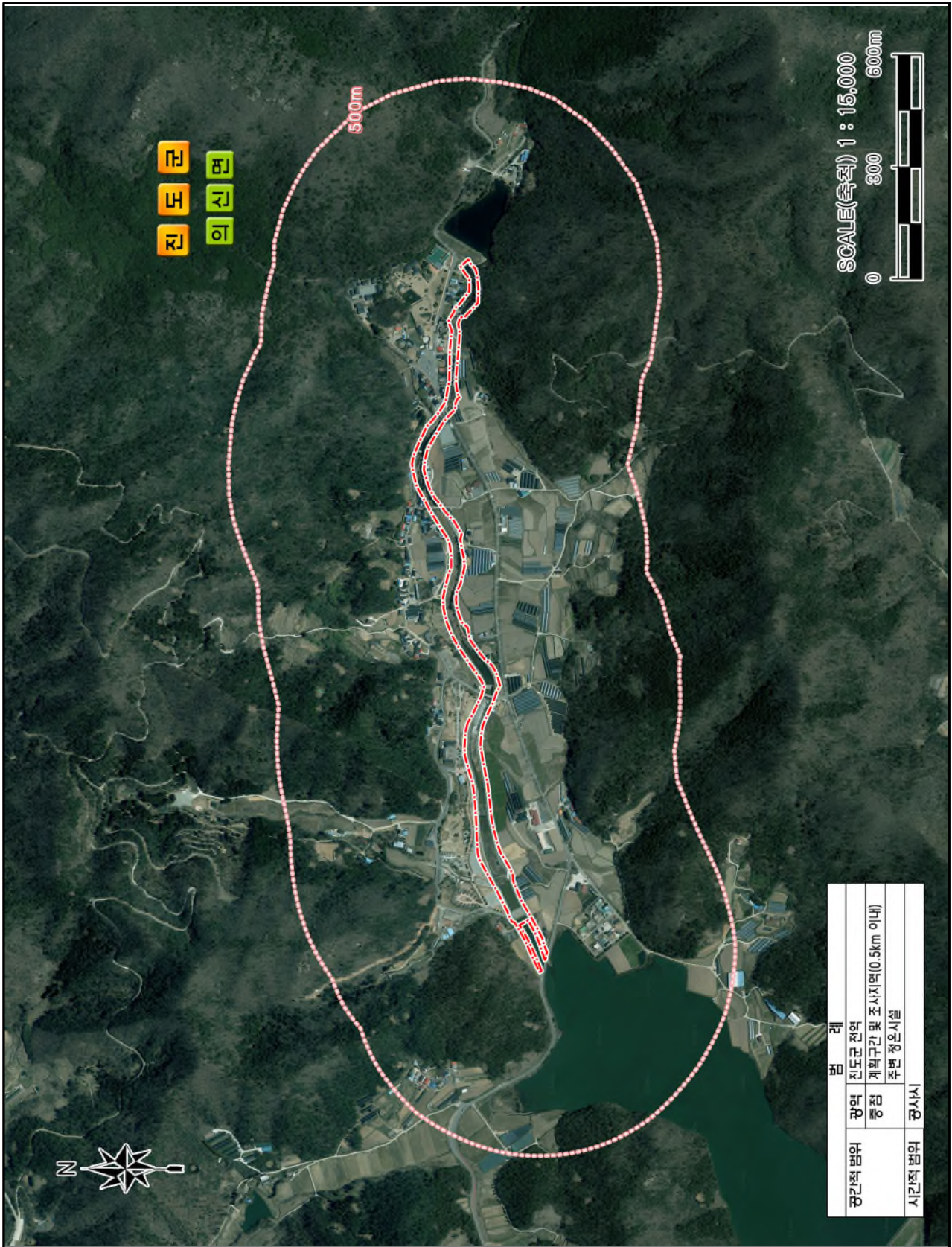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8년

2.2.2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설정

-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중 중점평가지역은 계획구간 및 주변 정온시설로 설정하여 검토하였으며, 광역평가지역은 계획구간 경계를 중심으로 0.5km 범위 내 지역 등으로 설정하여 검토함.

<표 2.2-1> 주요 항목별 검토대상범위

검토항목		세부평가항목	평가대상 지역	설정사유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 서식지 보전	동·식물상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· 계획시행시 식생변화 및 육상· 육수동물 서식환경 훼손 예상 지역
		자연환경자산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·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영 향이 예상되는 지역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· 계획시행시 지형변화 예상지역
	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대상지가 조망되는 지점	· 계획시행시 경관의 변화가 예 상되는 지역
	수환경의 보전	수질(저질)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 수계	·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
		수리·수문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 수계	·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· 홍수량 변화에 따른 하천시설 물 변화
생활 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 부 합 성	대기질	· 계획대상지 경계로부터 0.5km 이내	·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예 상지역
		온실가스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·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온실 가스 발생 예상지역
		소음·진동	· 계획대상지 경계로부터 0.5km 이내	· 공사시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영향예상 지역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·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예상지역
	자원·에너 지 순환의 효 율 성	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·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의한 영향예상지역
사회·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 지 이 용	토 지 이 용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지역	



<그림 2.2-1> 대상지역 설정도

제 3 장 대안의 설정

3.1 대안의 검토

3.1.1 대안의 종류 설정

-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, 제2025-10호」에 근거하여 대안 종류 및 방법을 선정하였음.
- “대안”이라 함은 일정의 목표(환경목표의 달성)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, 규모, 공법,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·검토 하는 것임.
- “대안의 설정”은 토지이용계획, 사업입지, 사업규모,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함.

<표 3.1.1-1> 대안종류 및 선정방법

대안종류	대안 선정방법	선정안	선정(제외)사유
계획 비교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	○	○ 행정계획수립(Action) 및 행정계획 미수립(No Action)에 따른 환경적인 비교 분석에 따른 대안 선정
수단·방법	○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	-	○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음.
수요·공급	○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○	○ 운림삼별초공원 내 사천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빈도의 조건에 따른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 설정.
입 지	○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지구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	-	○ 하천의 유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계획은 없을 것으로 검토하지 않음.
시기·순서	○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-	○ 본 사업은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에 해당되지 아니함.
기 타	○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	-	○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음.

3.1.2 대안별 검토내용

- 본 계획구간의 대안 선정은 “계획비교”, “수요·공급”에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·검토를 실시 후, 최적안을 선정하겠음.

가. 계획비교

- 계획비교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계획수립(Action)과 계획 미수립(No Action)시로 구분하여 대안을 설정하였음.

<표 3.1.2-1> “계획비교” 검토내용

구분	계획수립안(action)	계획미수립안(No action)
사업내용	○ 호안정비 및 축제계획	○ 현상태 유지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○ 사업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 정비로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 ○ 하천정비로 하천설계기준상의 여유고, 경간장 확보를 통한 원활한 홍수 통수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로 방문객 및 지역주민 불편함 해소 ○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○ 통수 능력 증대 및 수질개선, 친수공간 등 기능향상 예상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 자연환경 유지 가능 ○ 현 토지활용도 유지 ○ 현 환경질 상태 유지 ○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·진동, 분진등의 문제 발생 소지 없음.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적 영향 예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토사유출로 인한 일시적 수질 저하 ▶ 공사 소음으로 정온시설에 영향 예상 ▶ 일시적인 대기질 저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림삼별초공원과 연계하여 관광 및 경관 요소 미개선 ○ 하천 미정비로 인해 토사유실 및 하류 수계 토사유출 영향 발생

나. 수요·공급

- ‘진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’ 수립시 50년 빈도의 홍수량을 채택하여 검토하였으며, 금회 진도군 소하천정비계획을 참고하여 금회 사업계획 수립시 빈도별 대안등을 검토 후 반영할 계획임.

<표 3.1.2-2> 수요·공급 비교(계획빈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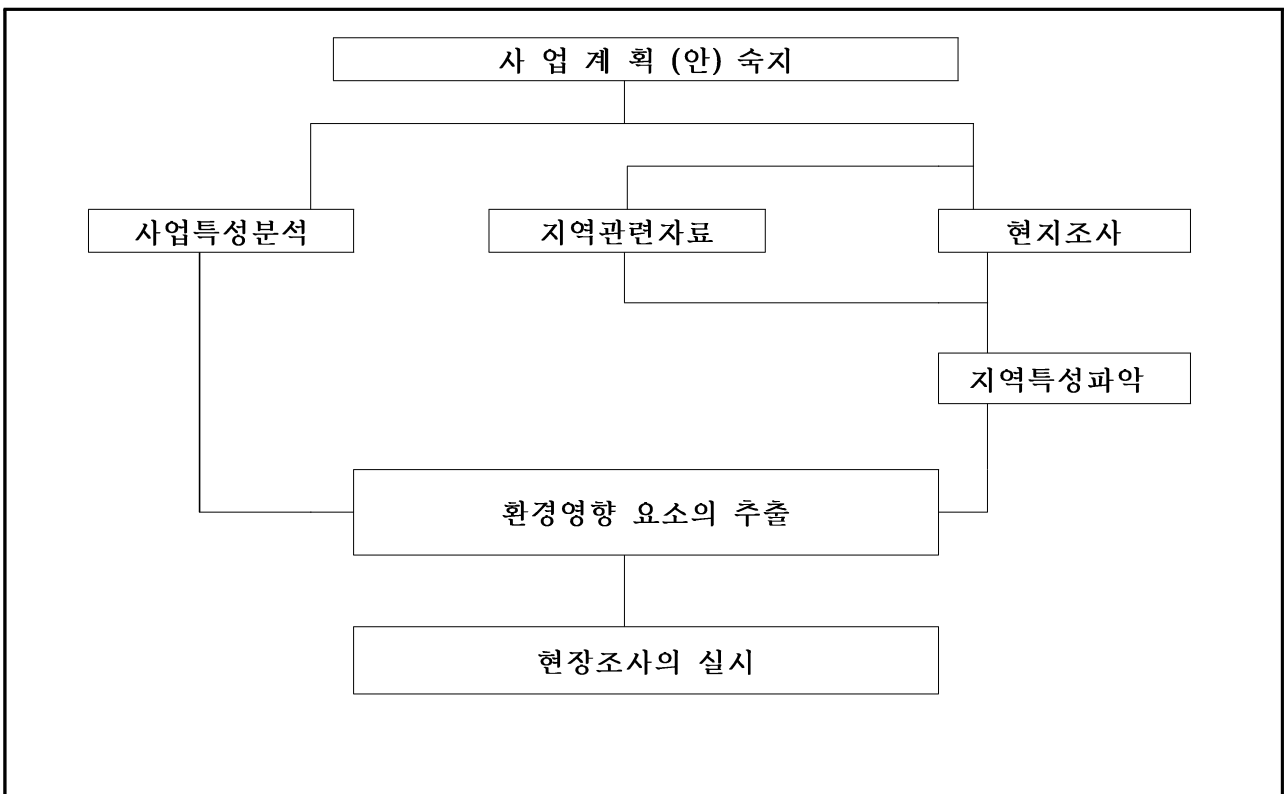
구 분	대안1 (30년 빈도)	대안2 (50년 빈도)	대안3 (80년 빈도)
기본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년 빈도의 홍수량을 채택하고, 통수단면을 현지형과 홍수상황에 맞추어 하천의 환경기능과 더불어 이·치수기능이 겸비된 하천계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0년 빈도의 홍수량을 채택하고, 통수단면을 크게 하여 하폭을 넓힘으로써 하천의 환경기능, 이수기능, 치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계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0년 빈도의 홍수량을 채택하고, 통수단면을 크게하여 확폭을 넓힘으로써 하천기능(환경, 이수, 치수)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천계획은 치수의 안정성 확보,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, 우수한 하천환경으로의 관리가 가능 • 30년 빈도의 홍수량을 채택하여 국지성집중강우 등사업지역 기상에 맞는 수해방지효과 보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천계획은 치수의 안정성 확보,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, 우수한 하천환경으로의 관리가 가능 • 50년 빈도의 홍수량을 채택하여 국지성집중강우 등에 따른 수해방지효과 보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은 치수의 안정성 확보,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, 우수한 하천환경으로의 관리가 가능 ○ 80년 빈도의 홍수량을 채택하여 국지성집중강우 등에 따른 수해방지효과 높음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년 빈도의 홍수량 채택으로 여름철 집중 강우시 침수피해 발생 우려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0년 빈도의 홍수량 채택으로 여름철 집중 강우시 침수피해 발생 우려 있음 • 보축, 시설물 신설 및 재가설 등이 적어 사업비 보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0년 빈도의 홍수량채택으로 여름철 집중 강우시 침수피해 발생 우려 있음 ○ 보축, 시설물 신설 및 재가설 등이 적어 사업비 증가
채 택		◎	
채 택 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설계기준(2019, 한국수자원학회), 소하천설계기준(2020, 행정안전부),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및 소하천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도를 결정하였으며, ○ 하천의 중요도, 홍수피해 측면,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으며, 또한 하천변 토지이용 현황이 주로 농경지 및 일부 취락지인 사항을 고려하여 50년 빈도를 최종안으로 선정함. 		

제 4 장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의 설정

4.1 평가항목 · 범위 · 방법

4.1.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

-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, 생활환경의 쾌적성, 사회·경제 환경의 편익성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,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.
- 그에 따라 본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주된 요인을 감안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시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. 02 환경부」 과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25-10호」 에 의거하여 계획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공사 단계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.



<그림 4.1.1-1> 환경영향요소의 추출모식도

4.1.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행렬식 대조표

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,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부호와 숫자는 <표 6.1.2-2>에 제시한 바와 같이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, 작성된 행렬식 대조표는 <표 6.1.2-1>에 제시한 바와 같음.

<표 4.1.2-1>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 행렬식 대조표

단계별	평가항목	자연환경의 보전					생활환경의 안정성					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	
		생물 다양성·서식지 보전	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수환경의 보전	환경기준부합성			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
		동·식물상	자연경관 자산				대기	온실가스	소음진동	토양			
공사단계	수계 생태계 및 초본류 훼손	△			△	△							
	기존 하천구조물 보강·철거											△	△
	절·성토에 의한 토량 이동			△		△		□		△			
	하천 정비로 인한 지형 변화	△		△	△	△	●			△			▲
	토사 유출 및 부유물질 증가	□				△							
	작업인부 투입	△				△							
	공사장비 투입							□	△	△			
이용단계	하천구조물의 존재	■			■		●						●
	하천, 농경지 경관 변화				▲								

<표 4.1.2-2>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

등급	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	등급	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
+3(●)	개발되면 상당히 좋다.	-1(△)	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.
+2(■)	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.	-2(□)	악영향이 다소 있다.
+1(▲)	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는 작다.	-3(○)	악영향이 크다.

4.1.3 평가항목 · 범위 설정 및 사유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요소 추출 내용을 고려하여 “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(2023.02), 환경부” 및 “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, (2025.03.26.)”를 참고하여 중점·일반·제외 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였음.

가. 주요 평가항목 설정

<표 4.1.3-1> 평가항목의 설정 및 사유

평가항목		선정구분			선정사유	
		중점	일반	제외		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○			· 계획과의 관련된 상위계획 및 연계성 여부 검토	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○			· 대안의 설정·분석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	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	○			· 사업시행에 따른 육상 및 육수 동·식물상 변화 · 하천 조성에 따른 수변 식생변화	
	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○			· 절성토 등으로 인한 지형의 훼손 여부 검토 · 축제, 보축, 호안정비 등 계획 수립시 지형변화	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	○		·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	
	수환경	○			· 공사시 하류수계의 영향 발생 · 기존 시설물 현황 및 능력검토 · 계획홍수위, 홍수량 및 계획 하폭등 검토	
	해양			○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적 영향 없음.	
생활 환경의 안정성	환경 기준 부합성	기상		○		· 대기질 항목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
		대기질	○			· 공사시 장비 및 토공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
		온실가스	○			· 공사시 장비운영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 검토
		악취			○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적 영향 없음
		소음·진동	○			· 공사시 장비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
		위생·공중 보건			○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적 영향 없음
		전과장해			○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적 영향 없음
		일조장해			○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적 영향 없음
	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	○		· 공사시 인력으로 인한 오수 및 폐기물 발생 · 공사시 축제 및 시설물 철거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
	에너지의 효율성			○		
사회·경제·환경 과의 조화성	환경 친화적 토지이용	토지이용	○	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 변화 발생	
		인구·주거			○	·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적 영향 없음

4.1.4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

○ 본 개발계획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내용과 평가방법을 결정함.

<표 4.1.4-1> 항목별 검토내용 및 방법(안)

구분		검토내용	평가방법	
자연환경의보전	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	동·식물 상 · 생태자연도를 통한 주요 식생 및 동물서식 여부 및 저감방안 수립	· 생태자연도 및 기존 조사자료를 통한 변화여부분석 · 동·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검토	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 · 중요 능선 및 생태축의 훼손여부 검토	· 일대 산경도 및 지형도 분석 ·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·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 등 영향여부 검토	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 ·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변화	· 경관시물레이션을 통한 경관변화 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	
	수환경의 보전	수질	·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현황 분석 · 공사시 토사유출량, 오수발생량	· 수질 상시측정망 이용 · 토사 및 우수증가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
수리수문		·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변화 · 기존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한 재설치계획 수립	·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·수문(홍수량, 홍수위 등)에 미치는 영향 평가	
생활환경의 안전성	환경기준의부합성	기상	· 대기질 영향검토시 기초자료이용	· 계획대상지 인근 기상대 최신 기상연보자료 활용
		대기질	· 주변 지역 대기질 현황 파악 · 개발로 인한 대기질 영향검토	· 대기질 현황조사 실시 · 대기오염물질 영향 검토
		온실가스	· 공사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검토	· 온실가스 관련법령 검토 · 온실가스 저감대책 강구
		소음·진동	· 인근 정온시설의 소음·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	· 점음원의 거리감쇠 이론을 적용한 소음발생정도 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
자원 에너지 순화의 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 · 생활폐기물 발생 예측 및 처리방안 · 기타폐기물 발생 예측 및 처리방안	· 진도군 통계연보를 활용 · 생활폐기물 발생량산정 · 기타폐기물 발생량산정		
사회·경제·환경	환경친화적토지이용	·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변화	· 토지이용변화검토	

<표 4.1.4-2> 항목별 영향예측 방법(1)

항목		구분	영향예측 방법	
자연환경의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	동·식물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: 생태계현황 ○ 조사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○ 조사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및 최근 문헌자료 분석 -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문헌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생태계 현황파악 및 예측
	지형 및 생태축의보전	지형·지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형형상, 지질상황, 토질성상 등 ○ 조사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○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형의 변화, 토지 및 사면의 안정성 등을 예측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: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○ 조사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○ 조사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망권 분석 검토(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검토)
	수환경의보전	수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주변 하천 수질현황 ○ 조사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및 주변하천 ○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질조사 ○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량 예측 ○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및 처리
생활환경의안정성	환경기준의부합성	기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○ 조사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진도기상대 ○ 조사방법 : 문헌자료 참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관측 자료 참조
		대기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○ 조사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0.5km ○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질 현황 조사 ○ 공사시 대기오염검토

<표 계속> 항목별 영향예측 방법(2)

항목		구분	영향예측 방법	
생활 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의 부합성	온실 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- 진도군 일원, 계획대상지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○ 조사범위 - 진도군, 계획대상지 ○ 조사방법 - 현지조사와 자료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관련계획 검토 ○ 공사시 토지이용 변화, 폐기물 발생·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, 저장량 변화 예측
		소음· 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소음발생원 현황 및 소음·진동도 ○ 조사범위 - 계획대상지 및 주변 0.5km ○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장비투입에 의한 거리 감쇠식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- 환경기초시설 현황 ○ 조사범위 - 계획대상지 및 진도군 내 ○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오수, 폐기물 등 발생에 대한 지자체 연계 처리계획 검토
	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친환 경적 자원 순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: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○ 조사범위: 계획대상지 및 진도군 내 ○ 조사방법: 문헌자료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단위에 의한 폐기물량 예측 및 지자체 연계처리 계획 검토
사회· 경제환경	환경 친화적 토지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내용 : 용도별,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○ 조사범위 : 계획대상지 및 편입예상지역 ○ 조사방법 : 기존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분석 및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검토

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5.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 또한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.

〈표 5.1-1〉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구분	환경영향평가법		의견수렴계획
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	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영향평가항목·범위 등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게재장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도군 홈페이지 (https://www.jindo.go.kr/) 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(http://www.eiass.go.kr) ○ 게재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4일 이상
전략환경영향평가지 주민 등의 의견수렴	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제14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13조 제2항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·공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에 의거 공고·공람 실시 - 공람기간 : 20일 이상(토요일·공휴일 제외) - 신문공고 : 일간신문, 지역신문 2개소 각 1회 이상 - 의견제출기간 :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○ 관계기관 의견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할군장·군수·구청장 - 승인기관의 장 - 협의기관의 장 - 유역·관할지방환경관서의 장 - 관할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- 30일 이내 의견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·공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일 이상(토요일·공휴일 제외) ○ 신문공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2개소 각 1회 이상 ○ 주민설명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에 따른 다른법령 의견 수렴 절차 이행 ○ 의견 제출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○ 관계기관 의견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인기관장 : 전라남도청 - 협의기관 및 관할지방환경관서 : 영산강유역환경청 - 관할군 : 진도군청

<표 계속>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구분	환경영향평가법		의견수렴계획
공청회 개최	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 ○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,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최할 예정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	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게재장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도군청 홈페이지 (https://www.jindo.go.kr/) 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(http://www.eiass.go.kr) ○ 게재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4일 이상

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

6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6.1.1 시행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실시함.

6.1.2 심의기간

- 2026년 5월 14일 ~ 2026년 5월 29일

6.1.3 심의방법

- 서면심의

6.1.4 심의내용

-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, 토지이용 구상안, 대안,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의 설정
- 심의위원회 구성(8명) : 위원장 1명, 위원 7명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위원장	진도군청 도시개발과	과장	기○○	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
위원	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	주무관	문○○	협의기관의 장 지명 소속 공무원
	진도군청 도시개발과	팀장	박○○	계획기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 지명 소속공무원
	(주)정원평가기술단	대표	양○○	환경영향평가, 사업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
	한국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본부	연구위원	이○○	협의기관 장 추천 민간전문가
	진도군청 환경수질과	팀장	강○○	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명 소속 공무원
	의신면 사천리	이장	주○○	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
그린진도21	사무국장	전○○	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	

6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

진도군청 도시개발과 기○○ 위원장

[별지 제1호서식 : 제3조 제3항 관련사항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□ 총 관 의 건

-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별초공원 경관개선을 위한 공원 내 소하천을 정비사업임.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함.
- 또한,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
- 환경목표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,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. 또한, 사업영향권 내 정온시설, 생태계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보전목표를 설정할 것

2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대상지역 설정 시 사업의 성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,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함.

3. 토지이용 구상안

-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여야 함.

4. 대안

- 하천 호안은 치수, 생태계 보전 및 환경적 측면과 설계빈도, 경관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호안공법을 비교·평가하고 최적안을 선정·제시하여야 함.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- 하천의 자연성 훼손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, 계획하천의 동·식물 서식 및 분포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여야 함.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,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.

7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- 의견없음

20 . . .

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

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

(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□ 총괄의견

- 동 계획은 진도군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일원의 소하천(사천천)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 대상 사업임
- 평가서 작성 시, 조사방법(지점 선정, 예측 조건, 예측 사용된 수치 등)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10호, '25. 10. 23.)」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
- 최근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·제시하여야 함

2.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- 대상지역은 상위·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
 - 동 사업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(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, 특정하천유역치수 계획 등)과의 부합·연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·제시
 - 해당 하천에 대하여 과거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현황 제시(도면에 기수립 구간 연장 및 수립 시기, 계획빈도 등 제시)
 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, 과거 침수피해 현황과 그 원인, 침수 범위, 개수율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(가옥, 농경지, 도로 등) 등을 제시하여 금회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토·제시
 -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누적 평가 실시

3. 토지이용구상안

- 소하천 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(보전, 복원, 친수지구) 시 홍수량 등에 따른 정비의 필요성, 소하천별 세부 현황(하천 내 시설물 등) 및 환경적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, 구체적 근거자료(도면 등)를 포함하여 필요성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
 - 하천 지구지정 현황과 금회 계획을 비교하고,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

4. 대안

- 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, 하천유역 및 토지이용 현황, 홍수 등 재해 현황, 상위·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 계획의 시행 및 미시행 대안의 설정을 비교·검토하고,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
- 치수안정도와 하천공간지정 현황,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·방법(구조적, 비구조적, 구조적+비구조적 대책)을 설정

5.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

【공통사항】

- 환경현황 조사지점은 각 항목별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, 항목별 조사 시기를 설정·제시하여야 함
- 평가범위는 계획수립·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,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

【자연생태환경】

-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동·식물상의 현지·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
-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각 분류군별 적정한 시기(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)에 실시하고,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
- ※ 동·식물상 조사는 각 분류군별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, 조사지점·구역·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
- 하천 식생 평가에 적합한 「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(하천편)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-43호, 2025. 10. 1.)」의 수변식생 건강성 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을 제시하여야 함
- 생태·자연도 1등급,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지역, 습지보호지역, 법정 보호종 서식지,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과 계획하천과의 중첩여부 및 이격거리를 제시하고, 계획 수립시행 시 이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·제시하여야 함
- 계획구간에 보호지역이 포함되거나 인접한 경우, 시설물 설치 계획과 동·식물상 조사결과 등을 중첩하여 도면에 확대·제시
- 하천환경이 우수한 구간은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
- 호안 공법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전성 확보 여부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친환경적 호안 공법인지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

- 하천 횡단시설물(교량, 보 및 낙차공)은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므로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, 존치 또는 재가설·신설하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,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
 - 보 및 낙차공의 위치, 현황 사진, 형식·기능, 어도 설치 여부, 능력 검토 결과, 시설의 노후도 및 시설보수 여부
 - 교량 위치, 현황 사진, 제원(교량형태, 교각 수 등), 능력 검토 결과 등
 - 교량 및 시설물의 신설, 존치 및 재가설 등의 결정 사유

【대기질 및 소음·진동】

- 대기질 조사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환경기준 상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

【수질】

- 계획 하천의 특성 및 하류수계,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및 수질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, 시행 가능한 수질개선 및 오염원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하천의 수량·수위(기본홍수량, 계획홍수량, 계획홍수위 등)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근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
- 횡단시설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,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하여야 함
- 하천저질 조사는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(2025. 8. 18.)에 따라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함
- 하천 수질 조사는 하천 생활환경 기준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주민 등 의견수렴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, 다양한 매체·경로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

7. 기 타

- 계획 하천의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며,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

2026. 5. 28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 [인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□ 총 관 의 건

- 본 하천의 이·치수 능력 확보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
-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저감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현재의 하천 선형을 가급적 유지하되, 하천 상·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함.

2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대상지역의 설정 범위는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. 02 환경부」 과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25-10호」 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음.

3. 토지이용 구상안

- 하천수질 및 생태계와 인근 정온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비는 지양하여야 하며, 동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.
- 하천의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계획하천 주변 자연 환경 및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
4. 대안

- 의견 없음.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- 하천의 수량·수위(기본홍수량, 계획홍수량, 계획홍수위 등)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근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.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관계법령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,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7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- 평가서 작성 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 등을 활용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.

20 . . .

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박○○

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□ 총괄 의견

- 본 사업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[별표2]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(2021.06.22)하였음.
- ※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 검토 완료
- 금회 '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(변경) 고시(전라남도 고시 제2025-505호)' 로 인한 지역개발사업 구역 변경(기정 28,580㎡ → 변경 71,600㎡)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.
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금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 포함이 가능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가능.
- 따라서, 금회 평가서 작성시 기 협의의견을 반영하고,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을 면밀히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
- 금회 사업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,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 및 재해 예방 및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따라서, 하천정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사유출에 대한 하류 수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함.

2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평가대상지역은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시기 바람.

3. 토지이용 구상안

- '진도군 소하천종합정비계획'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리·수문 및 제내지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.

4. 대안

- 대안설정은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10호」 【별표 3】을 참고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시기 바람.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- 의견없음.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의견없음.

7. 기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- 평가서 작성시 기 협의의견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.

2026. 05. 27.

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4
[인]
g

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(사업명 :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□ 총괄의견

- 본 사업은 하천정비 구간이 확대되는 계획으로, 공사구간뿐 아니라 하류 수계 및 저수지 유입부를 포함하여 수질, 수리·수문, 수생태계 영향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공사 중 탁수·토사유출, 하상교란, 수변식생 훼손, 홍수위·유속 변화 등을 검토하고, 기존 하천의 자연성 및 수변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.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1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), 수정의견(✓)

- 평가대상지역은 계획대상지와 주변지역뿐 아니라 공사 중 토사유출, 탁수 발생, 하상교란, 유속·홍수위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·하류 수계, 합류부, 저수지 유입부 등을 포함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수질, 수리·수문, 수생태계 항목은 단순히 계획대상지 주변으로 한정하기 보다 하류 방향 영향권을 고려하여 조사·예측 범위를 설정하고, 조사지점은 공사구간 상류, 공사구간 내, 하류, 저수지 유입부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.

2. 토지이용계획안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
3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), 수정의견(✓)

- 평가준비서에서는 계획비교 및 수요·공급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, 하천정비 계획빈도는 50년 빈도를 채택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.
-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계획빈도뿐 아니라 하천 선형, 통수단면, 호안 형식, 저수로 및 고수부지 계획, 생태형 하안 적용 여부, 하천 내 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따라 환경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친환경적 하천정비 대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하천 직강화, 과도한 인공호안, 하상 평탄화 등은 수생태계와 자연경관 훼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, 기존 하천의 자연형태와 여울·소, 하안식생, 수변완충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.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), 수정의견(✓)

- 동·식물상: 육상 동·식물뿐 아니라 어류,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, 수변식생, 법정보호종, 생태계교란 생물, 하천 상·하류 생태연결성 등을 포함하여 수 생태계 현황과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.
- 수질: 공사 중 토사유출, 탁수 발생, 오탍수 처리, 장비 유류 유출, 우기 시 비점오염 유입 가능성을 검토하고, 하천 및 하류 수계의 수질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단계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.
- 수리·수문: 계획 홍수량, 홍수위, 유속, 통수단면, 교량·암거 등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, 하류부 홍수위 변화, 하상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하천정비로 인한 홍수위 저감 효과와 하류 영향 여부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.
- 지형·지질: 하천 굴착, 제방 정비, 사면 조성, 토공량, 잔토 처리계획, 하상교란 및 세굴 가능성을 검토하고, 공사 중 토사유출과 사면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.
- 경관: 운림삼별초공원, 주변 농경지, 산림 및 저수지와 연계된 수변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호안, 산책로, 친수시설 등 하천정비 시설물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.
- 대기질 및 소음·진동: 공사 중 장비 운행, 토공작업, 운반차량 통행에 따른 인근 주거지, 공원 이용객, 정온시설 영향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, 필요시 공사시간 조정, 살수, 방진덮개, 저소음 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.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: 동의(), 수정의견(✓)

- 공사 중 통행 불편, 소음·진동, 탁수 발생, 농경지 및 수변 이용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주민, 농경지 이용자, 공원 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

최종 평가협의회 심의·의결 방법 : 대면심의(), 서면심의(✓)

2026. 6. .

심의위원 :  (인)

진도군 환경수질과 강○○ 위원

[별지 제1호서식 : 제3조 제3항 관련사항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□ 총괄 의견

- 본 계획은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(소하천정비)으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서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고, 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시행령 제2조 [별표1] 환경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함.
2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 - 대상지역의 설정은 공사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을 설정하여야 함
3. 토지이용 구상안
 - 상위 계획, 관련계획과의 방향 및 부합성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4. 대안
 - 축제등에 따른 시설물(호안 등) 설치 계획 시, 하천생태 및 경관개선에 효율이 좋고, 식생 도입이 우수한 친환경적인 호안공법을 선정하여 대안으로 검토 하여야 함.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 - 계획지역 주변 현황 및 하천 개황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을 설정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으로 인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.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 - 주민들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,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람
7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 포함 이 가능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가능.

20 . . .

환경수질과
[인]

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[별지 제1호서식 : 제3조 제3항 관련사항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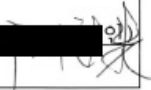
□ 총괄 의견

- 본 사업은 기 협의건으로 기 협의시와 금회 계획수립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명확히 비교·과약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기술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 -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함.
2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 - 대상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은 변경되는 부분이 고려된 주변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함.
3. 토지이용 구상안
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 및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, 기협의된 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여야 함.
4. 대안
 - 기정 구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비교하여 적법한 대안을 설정·제시하여야 함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 - 보전이 필요한 지역(야생동물보호구역, 생태자연도 등)의 해당여부, 이격거리 등을 검토하여 도면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.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 -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함.
7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 - 별도 의견 없음.

20 . . .

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

[별지 제1호서식 : 제3조 제3항 관련사항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)

□ 총괄 의견

- 삼별초 공원은 한옥펜션과 파크골프장 등이 위치해있고, 주변 윤림산방 및 윤림산림욕장 같은 관광지도 갖추어져 있어 진도군민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상태이다. 그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
-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적 특성과, 주변 자연에 미치는 환경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설정해야한다.

2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환경적 영향을 받을 곳을 관광지 주변 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별해야한다. 수질, 토지 같은 자연 및 생활 환경 등 미치는 영향을 예측 후 설정해야한다.

3. 토지이용 구상안

- 하천 상황에 맞는 공법과 기존 주변 관광지 및 주거지역의 시설물과 경관을 고려한다

4. 대안

- 의견 없음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-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해야한다.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사천리 하천 인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. 정비사업 시 불편한 점이나 추가 의견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
7. 기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- 의견 없음

2026 . 05 .

의신면 윤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